

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9.10.)

1 배경

-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6.15.)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,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, 미확인 감염 사례 증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지침을 수정·보완할 필요
- 당초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'20.9.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'토록 하였으나, 건강진단 실시율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유예 필요

2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

□ 기본원칙

-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2.28, 산업보건과-972)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'20.6.15.부터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
- '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'20.1.29)', '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2.28)'에 따라 「건강진단을 유예한 자」는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6.15)에 따라 원칙적으로 '20.9.14.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
- 다만,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
 - * 다만,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 까지 실시(특검기관은 건강진단이 지연될 경우 접수자에게 접수일,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)
-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,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정하여 처벌 대상이 됨

-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「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」은 노동자 배치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
- 다만,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한번에 실시 가능
-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

□ 건강진단 방법

-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「폐기능검사* 및 치아부식증 검사**」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

* 폐기능 검사: 폐활량검사,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, 비특이기도과민검사

**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, 염화수소, 질산, 황산, 염소가 있음

- (폐기능검사)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1차 항목에 「폐기능검사」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시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

※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(mMRC 호흡 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), 호흡음 청진,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

-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

<폐기능검사가 1차 항목에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7종>

글루타르알데히드, 디에틸렌트리아민,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(무수말레인산),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, 베릴륨, 코발트(분진 및 흠에 한정함),
 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, 톨루엔-2,6-디이소시아네이트,
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(무수 프탈산),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, 황화니켈,
 (무기)주석과 그 화합물, 미네랄 오일미스트(광물성 오일), 곡물 분진, 나무 분진, 니켈
 및 그 화합물, 광물성 분진, 면 분진, 산화철(분진 및 흠에 한정함), 석면분진,
 유리섬유 분진, 안티몬과 그 화합물,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, 용접 흠, 카드뮴과 그
 화합물, 크롬과 그 화합물, 텅스텐과 그 화합물

- (치아부식증 검사)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
 -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
 - 다만,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(부식증, 교모증)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*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 조치하고 실시
- *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(고용노동부, 제2020-60호) 제12조에 따라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
- (유증상자 검사)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유예*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특수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
 - * 유예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'U(재판정)'로 판정하거나 노동자·사업주에게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

3

건강진단 시 준수사항

□ 특검기관

- (1) 건강진단 장소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비치
- (2) 검사자에게 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를 충분히 제공
- (3) 가능한 경우 검사자와 수검자 사이에 투명칸막이 설치
- (4)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검사자는 건강진단 업무 배제
- (5) 임신부, 당뇨병 등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검사자는 가급적 폐활량검사 업무에서 배제

- (6) 출장검진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을 검진장소로 선택
- (7) 사용한 일회용 방역물품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밀봉하고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내에서 처리

◆ 폐기능검사 시 준수사항

- 폐활량검사는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
- 폐활량검사실은 환기시설 및 소독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
- 검사자에게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제공
- 수검자 한명마다 적절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, 코마개를 교체

□ 검사자(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)

- (1) 건강진단을 할 때, 수시로 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
 - 출장검진 차량의 흉부방사선 촬영실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공간은 이동식 송풍기와 송풍관을 이용하여 외부로 공기를 배기시키는 등 강제환기
- (2) 검진장소 출입구에서 수검자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
- (3) 검사자는 KF80·KF94 또는 동급 이상 호흡기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 착용
 - 수검자 접촉 전·후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손소독 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교체
 -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‘구강검사’와 ‘폐기능검사’를 실시하는 경우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

- (4) 청진기, 이경, 청력검사 버튼 등의 수검자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사용 전·후에 70% 에탄올 소독솜으로 소독
 - 신체 접촉이 없는 검사장비 및 기구는 1~2시간 간격으로 소독
- (5) 조용한 공간으로 청력검사 부스 이동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청력부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실시

3. 사업주

- (1)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
- (2)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
 - 가능한 경우 환기가 원활한 검진장소 제공
 - 검진 전날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 확인하고 이상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
 - 동시에 여러 수검자가 모이지 않도록 부서 또는 공정별로 건강진단 장소에 시차를 두고 이동하도록 노동자에게 안내

4. 수검자

- (1)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
- (2) 검사자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
- (3) 마스크 착용, 손씻기(손소독)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
- (4) 수검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(5) 청력검사 실시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검